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79호 2022. 12. 14(수)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838호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남원시 조례 제1839호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3
- 남원시 조례 제1840호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남원시 조례 제1841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남원시 조례 제1842호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12
- 남원시 조례 제1843호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 남원시 조례 제1844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남원시 조례 제1845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남원시 조례 제1846호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36
- 남원시 조례 제1847호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8
- 남원시 조례 제1848호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42
- 남원시 조례 제1849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남원시 조례 제1850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남원시 조례 제1851호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61
- 남원시 조례 제1852호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65
- 남원시 조례 제1853호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67
- 남원시 조례 제1854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36호 남원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79
- 남원시 훈령 제437호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86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2-169호 남원시 대강면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연건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91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38 호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조건부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을 “계약을 함으로써,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u>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u>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p> <p>4. (생략)</p> <p>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u>계약을 함으로써</u>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p> <p>6.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조건부를 포함한</u>----- -----.</p> <p>4. (현행과 같음)</p> <p>5. ----- ----- ----- --- <u>계약을 함으로써,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u>----- ----- -----.</p> <p>6.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39 호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남원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과지표 관리)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를 성과관리 자체평가 중 부서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0 호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공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글 전서체로”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u>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공인----- ----- ----- ----- -----.</p>
<p>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남원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u>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u>을 준용한다.</p> <p>②제1항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u>한글 전서체로 가로로</u> 써야 하며 규격은 <u>별표와</u> 같이 한다.</p>	<p>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 -----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35조를-----.</p> <p>②----- ----- <u>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u>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1 호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u>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p> <p>② <u>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전문가 3명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③ (생략)</p>	<p>제16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u>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 ----- -----.</p> <p>②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u> 2. <u>위촉직 위원: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심의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위촉해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2 호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해당없음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5천만원 미만 비용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3 호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청소년이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4 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u> <u>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u> <u>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u> <u>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u> <u>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u> <u>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u> <u>한다.</u>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5 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법 제10조의 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 1. 취득의 경우: 10억원
-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2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하여서”를 “사용허가하여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p> <p>1. 취득의 경우: 10억원</p> <p>2. 처분의 경우: 10억원</p>
<p><신 설></p>	<p>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p> <p>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p> <p>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p>
<p>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p> <p>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u>사용·수익</u>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p> <p>① ----- ----- ----- <u>사용허가대상</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① (생략)</p>	<p>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p> <p>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용허가하는</u> -----</p> <p>3. ----- ----- ----- ----- <u>사용허가하는</u> ----- -----</p>
<p>제19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p> <p>① (생략)</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안 된다.</u></p> <p>1. 2. (생략)</p>	<p>제19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용허가하여서</u>-----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0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p>	<p>제20조(<u>사용허가</u>) ----- <u>사용허가</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 ----- --</p>

현행	개정안
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u>사용허가</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21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의 <u>사용·수익허가부</u> 를 비치하 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u>사용허가부의 비치</u>) ---- ----- <u>사용허가부</u> -----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 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 조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 의 대 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 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u>사용허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 탁받은 관리수탁자가 <u>사용·수 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 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 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 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자에 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	③ ----- <u>사용허가</u> ----- ----- ----- ----- -----.

현 행	개 정 안
<p>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8조(대부료율) ① ~ ⑤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u>----- ----- -----.</p> <p>제28조(대부료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초지법</u>」 제18조에 따른 <u>공유재산 대부료</u></p>
<p>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p>	<p>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p>

현 행	개 정 안
<p>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p>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p> <p>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p> <p>⑤ (생략)</p> <p>제32조(대부료·사용료의 감면)</p> <p>①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에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p> <p>-----</p> <p>-----</p> <p>-----</p> <p>-----</p> <p>-----</p> <p>-----</p> <p>1. -----</p> <p style="text-align: center;">----- <u>사용허가</u> -----</p> <p>-----</p> <p>-----</p> <p>2. -----</p> <p style="text-align: center;">----- <u>사용허가</u> -----</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2조(대부료·사용료의 감면)</p> <p>①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조의2제3항 -----</p> <p style="text-align: center;">----- <u>사용허가하는</u> -----</p> <p>-----</p> <p>-----</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p>
<p>1.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하는 경우</p>	<p>1. ----- ----- ----- ----- <u>사용허가</u> ----- -----</p>
<p>2.·3. (생략) 제33조(<u>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u>)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u>사용·수익허가</u>,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3. (현행과 같음) 제33조(<u>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u>) ① ----- ----- ----- <u>사용허가</u> ----- ----- -----.</p>
<p>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용허가</u> ----- -----</p>

현 행	개 정 안
<p>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p>	<p>-----. ----- ----- ----- ----- -----.</p>
<p>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u>사용·수익허가</u>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그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u>사용허가</u> ----- ----- ----- ----- -----. 1. ~ 3. (현행과 같음)</p>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6 호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위탁·위촉)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7 호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라북

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남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8 호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1차 산업 근간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원시 농촌인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희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을 포함한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3.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지원
9.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11. 그 밖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농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4. 농작업 안전물품
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6.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9.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개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수행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49 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13. (생 략)</p> <p>14. <u>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15. (생 략)</p>	<p>제6조(경쟁력 지원) -----</p> <p>-----</p> <p>-----</p> <p>-----.</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삭 제></p> <p>15.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50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지원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관련부서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을 일자리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일자리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5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 서 직원 2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 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행정지원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지울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안전건설국장			
담 당 관	안전재난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 관리 총 괄 반 (17+a명)	가) 재난정보 수 집 · 분석 및 전파, 재 난 상 황 관 리 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 일자리경제과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행정지원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 난 상 황 총 괄 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 능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 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한국도로공사 남원도로관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KT남원지사, 지역자율방재단,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가. 풍수해 (태풍· 호우·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 및 화산	1) 비상 1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 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 단계	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51 호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관리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52 호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

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운영·관리의 위탁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53 호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농어촌” 및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율에 따른다.

③ 빈집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정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철거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그 외의 지역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각 호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원시 공보에 고시하고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빈집 정비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 정비 방법)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및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를 교체하는 방법 등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3. 빈집 철거 방법
4. 빈집의 매입
5.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이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정빈집) ①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행정지도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남원시 건축 조례」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빈집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기업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방법, 입주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빈집의 정비, 지원 및 매입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매년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 농어촌 및 준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른 필요한 철거 등 조치가 명해졌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4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에 따라 각 심의회 등의 회의 또는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 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854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단서 중 “영 별표1제21호”를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1호”로, “창고시설”을 “창고 등 부대시설”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

다”를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을 “낮은”으로, “0.5배”를 “0.8배”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를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수당 및 여비) (생 략)</p> <p><신 설></p>	<p>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별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창고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p>	<p>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별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1호----- ----- - 창고 등 부대시설----- ----- -----.</p>
<p>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p>	<p>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건축사법</u>」에 따른 건축사로 하되, <u>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u></p>	
<p>④ <u>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u>(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p>	<p>④ <u>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한다</u>----- ----- ----- ----- ----- -----</p>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p>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중전의 제3항은 제6항으로 이동]</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p>	<p>⑤ -----</p>

현 행	개 정 안
<p>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u>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u>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u>0.5배</u>) 이상으로 한다.</p> <p>⑥ (생 략)</p> <p>제4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p> <p>② <u>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u>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p> <p>③·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 --- 낮은 ----- ----- ----- ----- ----- ----- 0.8배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80조제5항에 따른</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훈령 제 436 호

남원시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단체”를 “시장 또는 중소기업단체”로, “시장”을 “도지사”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업담당 과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공동도

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④ <u>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⑤ <u>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으로 시장이 정한다.</u>
<u><신 설></u>	<u>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따른다.</u>

붙임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단체
 2.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

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전문 개정 2013. 1. 23.]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별로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당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광역지자체의 경우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해당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일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재산의 처분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
2. 소모성 설비 : 2년.
3. 그 밖의 시설물은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정한다.

② 중소기업자단체는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업추진기간 동안은 센터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 사업추진기간 동안의 센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12월 14일

남원시 훈령 제 437 호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소장이”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과장, 사업소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직 규정」 제10조”를 “「공무직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사용부서장의”을 “근무지 소속 부서장(이하 “사용부서장”으로 한다)의”로 한다.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순환근무) 시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관리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순환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사용부서장”을 “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부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성실의무 위반 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교체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한다”를 “하며, 작업 시 차량 운전자와 소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를 “하며,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채용 및 작업지시) ①환경 관리원은 「남원시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이하 “「공무직 규정」”이라 한다)제10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소장이</u> 채용한다. 다만, 작업구역 지정 및 순환근무 지시는 <u>환경과장, 사업소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u> 책임 하에 시행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채용 및 작업지시) ① ----- ----- ----- ----- ----- -----<u>남원시장(이하 “시</u> <u>장”이라 한다)이</u> ----- ----- -----<u>환경과장</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결격사유) 「공무직 규정」 <u>제10조</u>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p> <p>1. 2. (생략)</p>	<p>제4조(결격사유) 「공무직 규정」 <u>제13조</u>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6조(준수사항)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u>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u></p>	<p>제 6 조 (준 수 사 항) ----- ----- -----.</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u>근무지 소속 부서장(이하</u></p>

현 행	개 정 안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7. (생략)</p>	<p>“<u>사용부서장</u>”으로 한다)의 -----.</p> <p>4. (현행과 동일)</p> <p>5. (현행과 동일)</p> <p>6. (현행과 동일)</p> <p>7. (현행과 동일)</p>
<p><신설></p> <p>제9조(부장 임명) <u>사용부서장은</u>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소관리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7조의2(순환근무) <u>시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관리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u></p>
<p><신설></p>	<p>제9조(부장 임명) ① <u>환경과장</u>-----</p> <p>-----</p> <p>-----</p> <p>-----</p> <p>-----</p> <p>-----</p> <p>② <u>환경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부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성실의무 위반 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임무) ① (생 략)</p> <p>② 환경관리원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p> <p>1. 청소차 운전공무원 또는 환경관리원 선임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p> <p>2. 차량에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3. ~ 7. (생 략)</p>	<p>제10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 ----- 하며, 작업 시 차량 운전자와 소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의하여야한다.</p> <p>2. ----- ----- -- 하며,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3. ~ 7. (현행과 같음)</p>

남원시 고시 제 2022 - 169호

남원시 대강면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원시 대강면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남원시 대강면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목적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
3.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1,254백만원, 지방비 474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5.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6. 사업기간 : 2021. 4. ~ 2024. 12.(4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